####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업무 지침

제정 2022. 9. 28. 개정 2023. 6. 29. 개정 2024. 4. 23.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이라 한다)」 제48조의6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0조의3의 규정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4조 및 「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(이하 "고시"라 한다)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정보보호인증시험과 정보보호인증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

- 1. "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"이란 영 제36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기·설비·장비로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말한다.
- 2. "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(이하 "정보보호인증"이라 한다)"이란 법 제48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말하며,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대상으로 시험대행기관이 수행한 인증기준 적합성 시험결과를 인증기관이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기본 인증모델"이란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제품 중 파생모델의 제품군에 관한 표본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. <신설 2023. 6. 29.>
- 4. "파생모델" 이란 기본 인증모델과 핵심 부품(펌웨어, PCB(회로), CPU, 네트워크(유/무선))의 형상이 동일하며,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(예. 제품 색상, 제품 라벨 및 제품 외부 인쇄, 디스플레이 크기, 버튼 형상), 기타 부품·장치(예. 단종에 따른 대체 부품, LED 색상 등)를 변경한 제품 (이하 "파생모델 A형"이라 한다.)과 기본 인증모델의 핵심 부품의 형상이 일부 변경(예. 통신, 센서 등 기능성 착탈 모듈 제거)으로 동일하지 않으나,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(이하 "파생모델 B형"이라한다.)을 말한다. <신설 2023. 6. 29.>
- 5. "인증기관"이란 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 인증기관으로서 정보보호인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기준 개발, 시험방안 마련, 시험결과 검증, 인증품질 관리, 인증서 관리 등 인증체계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하며, 본 지침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. <개정 2023. 6. 29.>
- 6. "인증시험대행기관(이하 "시험대행기관"이라 한다)"이란 법 제48조의6제4항 및 영 제60조의7제 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정보보호인증 시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7. "인증신청인"이란 영 제60조의3에 따라 신청서 및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서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.
- 8 "인증취득인"이란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- 9. "인증위원"이란 인증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말한다.

- 10. "인증기준"이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고시 [별표 1]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인증기준과 인증기관의 해석 내용을 포함한다.
- 11. "제출물"이란 다음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.
- 가. 신청 제품 사양 및 운영환경 설명서
- 나. 정보보호인증 기준 적용 명세서(시험방법 포함)
- 다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
- 라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
- 마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제품
- 12. "시험"이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험대행기관이 인증기준 및 시험·인증기준 해설서를 적용하여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보안성을 시험하고 제출물을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.
- 13. "최초 시험"이란 정보통신망연결기기에 대해 최초로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.
- 14. "유효기간 연장 시험"이란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성질· 형상이 동일한지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.
- 15. "변경 시험"이란 정보보호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형상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된 부분만 추가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29.>
- 16. "인증기준 해설서"란 시험대행기관이 시험과정에서 적용해야 하는 인증기준 항목별 세부적인 요구사항 및 확인사항을 서술한 문서를 말한다.
- 17. "시험 절차"란 시험대행기관에서 인증시험 의뢰부터 검토, 시험, 보완, 시험 종료까지 일련의 정보보호인증시험 절차를 말한다.
- 19. "시험결과보고서"란 시험대행기관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상세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.
- 20. "인증제품"이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.
- 21. "사후관리"란 인증취득 이후 인증제품의 지속적 보안수준 유지를 위해 취약점 발생 시이를 조치하고 보완하는 활동을 말한다.

#### 제2장 인증신청 및 수수료 납부 등

제3조(인중 신청) ① 인증신청인은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 <개정 2023. 6. 29.>
- 2.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 사양 및 운영환경 설명서
- 3.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호인증 기준 적용 명세서(시험방법 포함)
- 4.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
- 5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
- 6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제품
- 7.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8. 고시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상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- 9.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요구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기관이 신속한 시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<신설 2024. 4. 23.>
- ② 인증신청인은 파생모델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본 인증모델과 파생모델 제품 간의 형상 및 보안기능에 동일 또는 변경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이하 '입증자료'라 한다)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6. 29.>
- ③ 인증신청인은 제출물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출물이 타인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증신청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6. 29.>
- ④ 인증신청인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으로부터 수정·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인증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, 사유서를 제출하고 인증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·보완 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6. 29.>

제4조(인중신청접수중 발급) ① 인증기관은 신청기관으로부터 인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증시청 서 및 제출물을 검토, 신청제품의 기능점검 후 인증신청접수증(별지 제4호 서식)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인증신청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제출물의 내용 혹은 신청제품의 기능상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인증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인증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2. 신청한 정보통신연결기기등에 대해 인증시험항목에 적합한 시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간 내에 시험·인증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3. 신청한 정보통신연결기기등에 대해 시험대행기관의 인력, 기술력 또는 관련 시험장비의 미비 등으로 시험·인증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인증기관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 산정) ① 인증기관은 고시 제16조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시험 단위업무 소요기간을 기반으로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이 포함된 수수료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29.>

- ② 시험대행기관은 수수료 산정내역서 상의 수수료가 정보보호인증시험 단위업무 소요기간 적용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면 수수료의 재 산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9.>
- ③ 인증기관은 시험대행기관이 재 산정한 수수료 산정내역을 제출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29.>

**제6조(수수료 납부)** ① 시험대행기관은 수수료 산정내역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증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.

- ② 인증신청인은 시험 착수 전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시험대행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인증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증신청 취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, 시험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인증신청 취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6조의2(수수료 지원) ① 인증기관은 고시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시험대행기관에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4. 23.>

- 1. 인증신청인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
- 2. 법 제48조의6에 따라 최초 시험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

제7조(시험의뢰) ① 인증기관은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시험역량을 갖춘 시험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시험을 의뢰하고 신청서 및 제출물을 전달하여야 한다.

- ② 인증기관은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국가 재난, 인명 등 국가 차원에서 보안성 강화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최우선으로 시험을 진행 하도록 시험대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인증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요구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기관이 신속한 시험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험을 진행하도록 시험대행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4. 23.>
- ④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제출물을 수신한 경우 제출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기밀에 해당하는 제출물은 시험대행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4. 23.>⑤ 시험의뢰를 받은 시험대행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물을 검토하고 인증시험항목, 시험 난이도, 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 세부일정을 포함한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시험업무 수행

제8조(시험업무 수행) ① 시험대행기관은 인증시험 시작 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시험수행 계획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주요특징
- 2. 시험장비 및 도구 등 시험환경, 시험인력, 시험일정
- 3. 기타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계획서에 따라 인증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인증기준 및 인증 해설서에 명시된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출물을 분석하여야 한다.
- ③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이 제공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분야별 시험·인증 방법론을 참조하여 제출물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증시험항목별 시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시험대행기관은 시험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연결기기 특성으로 인하여 자체 구축이 어려운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시험환경 구축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⑤ 시험대행기관은 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기능을 시험하고 이러한 시험 결과가 포함된 시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⑥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.
- ⑦ 인증기관은 시험대행기관이 부득이하게 인증시험항목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외부

기관에 일부 인증시험항목에 대해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시험을 의뢰하기 전에 시험환경에 대한 보안관리대책 및 적격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 ⑧ 시험대행기관은 시험결과가 인증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및 제출물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, 인증신청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정·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⑨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, 인증신청인은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고 시험대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·보완 기간을 협의할 수 있다.
- ⑩ 시험대행기관은 파생모델의 경우, 핵심부품의 형상이 일부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시험할 수 있다. 다만, 파생모델 A형의 경우 시험대행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6. 29.>

제9조(시험·인중방법론 개발) 인증기관은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시험하기 위한 적절한 인증 시험항목이 없거나 표준 시험방법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 관련자료 검토, 시험대행기관 기술검토, 전 문가 자문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시험·인증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험업무 지연) 시험대행기관은 목표한 시험일정보다 시험이 지연되는 경우 사유에 대해 인증기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6. 29.>

제11조(시험업무 중단) ① 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보호인증 시험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

- 1. 인증신청인이 고의로 시험업무를 지연 또는 방해하는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인증신청인이 시험대행기관의 수정·보완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·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- 3. 인증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인증시험을 철회한 경우
- 4. 천재지변 및 경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5. 인증신청, 시험, 보완조치 등 일련의 인증과정 중에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정보보호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
- 6. 기타 인증기관이 중단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
- ② 시험대행기관은 시험 중단 사유와 함께 시험 중단 사실을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.
- ③ 인증기관은 시험 중단된 인증 신청 건에 대해 인증신청접수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험 완료) ① 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시험 결과보고서 작성 시 허위 또는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.

- ② 시험대행기관은 시험 완료 후 시험결과가 기록된 정보보호인증 시험 결과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험대행기관은 인증기관이 정보보호인증 시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시험 종료일

다음날부터 산정하여 14일 이내로 보완하여야 한다.

- ④ 보완된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추가적으로 30일이내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시험대행기관은 시험 완료 또는 시험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출물을 인증신청인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인증신청인 및 인증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증기관에 반납하거나 자체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험결과 검토) ① 인증기관은 시험대행기관이 제출한 정보보호인증 시험 결과보고서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, 시험 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.

- ② 인증기관은 정보보호인증 시험 결과보고서에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험대행기관에게 수정·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인증시험을 요청할 수도 있다.
- ③ 인증기관은 검토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검토결과의 적합 판정에 대해 인증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

제14조(인중서 발급) ① 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시 인증번호의 유일성, 간결성,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시험, 유효기간 연장 시험, 변경 시험의 구분 없이 최초 발급순서 별로 다음과 같이 인증번호를 부여한다.

CIC[정보보호인증]0000[최초 인증발행 연도]-O[인증등급 약자]-0000[발행 연도에서의 부여순서] <개정 2023. 6. 29.>

- ② 인증기관은 파생모델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본 인증모델로 발급한 인증서에 파생모델의 모델명을 추가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6. 29.>
- ③ 파생모델의 인증 유효기간은 기본 인증모델의 유효기간에 만료일을 따른다. <신설 2023. 6. 29.>

제15조(인증서 관리) 인증기관은 발급한 인증서의 인증번호, 인증범위, 유효기간 등을 관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
제16조(인중 유효기간 연장) ① 인증취득인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 당시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유지하였을 때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, 기존 만료일로부터 2년을 가산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9.>

- ② 인증취득인은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6. 29.>
  - 1. 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신청서
  - 2. 별지 제1호 서식의 제품 사양 및 운영환경 설명서
  - 3.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보보호인증 기준 적용 명세서(시험방법 포함)
  - 4.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

- 5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
- 6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품
- 7.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- 8.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서
- 9.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품이 정보보호인증 받은 제품의 형상과 동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- ③ 인증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취득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6. 29.>

제17조(인증 변경시험) ① 인증취득인은 인증제품의 형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, 변경 시험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기능 추가, 설계 변경 등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라 변경시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인증을 취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변경시험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, 변경된 제품에 대해서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.

제18조(사후관리) ①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에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인증취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- 1. 인증을 받은 기기에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
- 2. 인증을 받은 기기에 보안기능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
- 3. 신규 운영체제의 등장 등 인증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운영환경 취약점이 발생한 경우
- ②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에 대한 새로운 취약성, 인증내용 오·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취득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인증기관은 인증제품 조사결과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인증취득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인증취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완·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인증기관은 보완·조치 내역을 검토하여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⑤ 인증기관은 인증취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·조치 내역을 통보 하지 않은 경우취약점이 보완되기까지 인증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⑥ 인증기관은 인증 효력 정지 기간이 인증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효력 연장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인증위원회 운영

제19조(인증위원 의무) 인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윤리 및 보안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인증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증시험 결과를 심의한다. <개정 2023. 6. 29.>
- 2. 인증위원은 성실한 직무수행 및 품위를 유지한다.
- 3. 인증위원은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전,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다.
- 4. 인증위원은 인증 심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.

- 5. 인증위원은 인증 심의와 관련하여 상업적, 재정적 등 기타 모든 압력을 배제하여야 한다.
- 6. 인증위원은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제20조(인증위원회 개최) 인증기관은 인증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, 장소, 안건 및 기타 관련사항을 회의 소집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인증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증위원회는 서면 또는 원격으로 심의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9.>

제21조(인증위원회 운영) ① 인증기관은 각 위원들이 작성한 인증위원회 심의 의견서에 근거하여 최종 심의 결과를 작성한다.

② 동일한 제품 또는 안건으로 인해 인증위원회 재개최 시 동일 안건 심의 인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의 50% 이상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.

제22조(인증위원의 역할) 인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- 1. 인증시험 및 사후관리, 연장시험 결과 심의
- 2. 인증기준, 인증대상, 인증범위 등 심의
- 3. 인증 취소 및 이의 상정 건에 대한 심의
- 4. 기타 인증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

제23조(수당 지급)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의 내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인증위원회의 서면 심의 또는 온라인 심의 시에도 인증위원회 개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6장 기술검토위원회 운영

제24조(기술검토위원회 구성) ① 인증기관은 인증시험 범위, 기준 적용 등 인증시험 운영에 관한 기술적 의견수렴을 위해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② 기술검토위원회는 산업,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명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.

제25조(기술검토위원회 개최) 인증기관은 기술검토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일시, 장소, 안건 및 기타 관련사항을 회의 소집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기술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검토위원회는 서면 또는 원격으로 심의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6. 29.>

제26조(기타사항) ① 위원은 기술검토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②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제도 담당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. <개정 2023. 6. 29.>

#### 부 칙 <2022. 9. 28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<2023. 6. 29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<2024. 4. 23.>

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 첨부1.

# 제품 사양 및 운영환경 설명서

제출일자	2022.1.1.
신청기업	
인증유형	예) Lite, Basic, Standard
제 품 군	예) 디지털 도어록, 월패드 등
제 품 명	예) 000 제품 또는 000 앱
모 델 명	

## 〈문서 이력〉

제출일자	주요 변경 이력

# 1. 신청 정보

## ① 인증목적

인증목적	☞ 법적요구, 고객요구, 내부 정책 등 고려사항을 기술
주요고객	☞ 예정 및 확정 된 실제 내용 기술 (인증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함)
납품예정처	☞ 예정 및 확정 된 실제 내용 기술 (인증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함)
납품수량	☞ 예정 및 확정 된 실제 내용 기술 (인증 통계 목적으로만 활용함)

## ② 업무담당자

직급(업무)	부서	성명/직호	연락처	이메일

## 2. 제품 기능

① 제품 주요 기능 설명

## ② 연동제품

	앱	ex) 시험대상 제품과 연동하는 모바일 앱 등=[제어 목적의 앱 등]
de Tie	기기	ex) 월패드, 도어록, 연동 센서 등
연동제품 -	서버	ex) 웹서버, 운영서버, 제어서버
	기타	ex)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연동제품의 경우

# 2. 제품 사양

	구분	사 양	
신청등급			
구분		예) 기기, 모바일앱 등	
	분야	예) 가전, 스마트도시, 교통 등	
	제품유형	예) 도어록, 월패드, AI스피커 등	
	제 품 명		
	모 델 명		
	제품버전		
제조사	하드웨어	예) ㈜ABC 하드웨어 제조사	
게 고 시	소프트웨어	예) ㈜DEF 소프트웨어 제조사	
	PCB 정보	필요시 칸 추가 (복수의 PCB 인 경우 추가)	버전
	Main MCU (부품명, 코어 정보, 내부 메모리 용량 등)	ঝ) ZZZ32F111MZ, ARM CORT RAM 32K	EX M4, 내부 Flash 128K,
	Memory (메모리 유형 및 용량)	예) Serial Flash 1Gb	
<b>하드웨어</b> <i>모바일 앱</i>	Storage	예) HDD 256G	
일 경우 제외	무선통신 (보안통신 여부)	ৰী) Wi-Fi, Bluetooth (BLE 5.0)	
	유선통신	ৰী) Ethernet, RS485	
	외부 인터페이스		
	내부 인터페이스		
소프트	소프트웨어기능		
웨어	개발 언어		
0.01+11+11	OS	예) Linux x.x.x , Android 11.XX ☞ 펌웨어 인 경우 제외	X : OS+ver
운영체제	펌웨어	예) Firmware 모델명, RTOS 모델명  ☞ OS 인 경우 제외	버전
ç	업데이트 방식		,

## 4. 통신모듈

## 4.1 무선통신

	구분	시스템 사양		
		표준	예) Bluetooth 4.0 BLE	
		비표준		
9	)	암호방식 및 수준	예) 보안통신, 보안모드1/보안레벨3	
	Bluetoo th		모델번호	예) KISA-CC2540
		통신모듈	제조사	예) KTKT
			펌웨어 버전	예) V2.1.3

## 4.2 유선통신

구분	시스템 사양		
표준		예) Ehternet : IEEE 802.3	
예) Ehternet	암호방식 및 수준	예) TLS 1.2	

## 5. 운영체제 정보

구분	시스템 사양		
예) Linux	OS명	예) CentOS	
	버전	예) 7.1.4	

## 6. 소프트웨어 정보

구분	구분	시스템 사양
	소프트웨어 유형 (펌웨어, 범용 OS기반 어플리케이션, 모바일 App,등)	예) Linux 기반 App. 5종 - 통신 드라이버 app. - 조명제어 App. - 관리 서비스 DB
	개발 플랫폼(언어)	4) C, JAVA
	적용 SDK 버전 (MCU 적용)	예) Atmel 사 제공 SDK 3.24 개발 플랫폼 : AT Studio 5.8
xx SW	3rd Party 라이브러리 사용 여부 및 세부	예) 보안통신: OpenSSL 1.1.1e 예) 암호화: Crypto++® Library 8.2 예) DB: SQLite .31.1
	통신 모듈 SW 버전 (적용 시)	예) HW 사양과 동일 ※ 통신모듈에서 동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펌웨 어, 라이브러리 등
	업데이트 방식	예) 업데이트 서버, FOTA, SD 카드 이용 업데 이트

## 7. 데이터 정보

#### 7.1 수집데이터

수집경로	데이터
예) 온습도 센서	예) 온도 습도 데이터

## 7.2 저장데이터

## - 중요 정보

저장방법	데이터
예) 암호화 저장 (AES-128-CBC)	예) 암호키, 전화번호
(AES-128-CBC)	

#### - 일반 정보

데이터
예) 암호키, 전화번호

## 7.3 전송데이터

## - 중요 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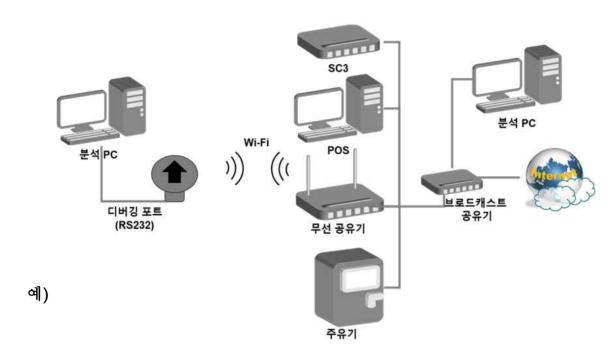
전송 구간	네트워크 인터페이스	데이터
예) 시험제품 -> 서버	예) 이터넷, BLE	예) 영상테이터

# - 일반 정보

전송 구간	네트워크 인터페이스	데이터
예) 시험제품 -> 서버	예) 이터넷, BLE	예) 영상테이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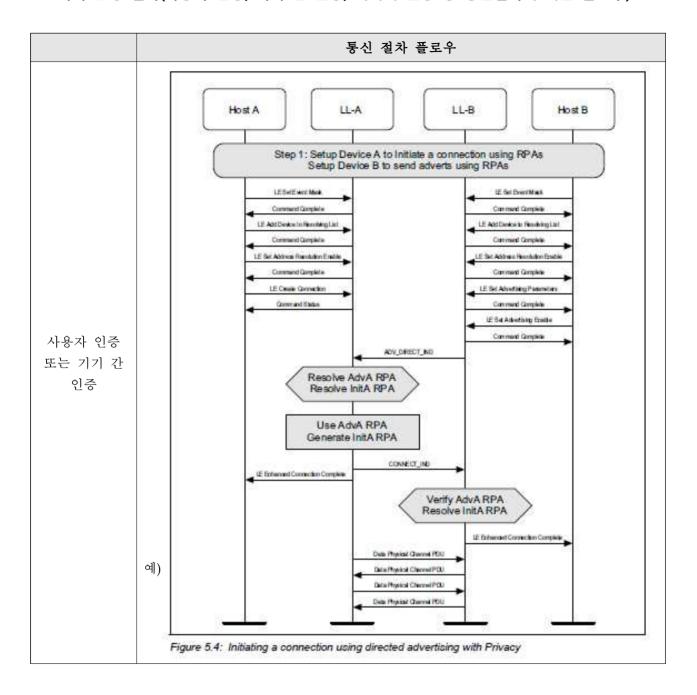
# 7. 기기 운영환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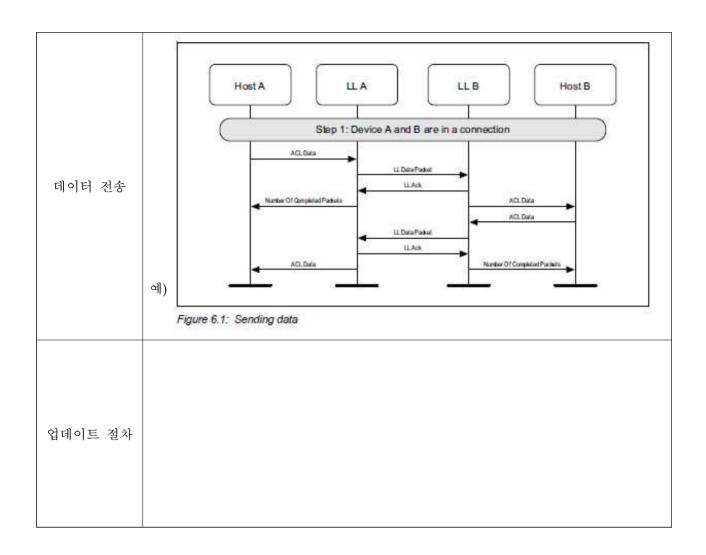
## 7.1 기기 운영환경 (네트워크 구성도)



※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운영환경만 표기

#### 7.2 기기 운영 절차(사용자 인증, 기기 간 인증, 데이터 전송 등 통신절차에 따른 플로우)





# 첨부2.

# loT 보안인증 기준 적용 명세서

제출일자	2022.1.1.
신청기업	
인증유형	예) Lite, Basic, Standard
제 품 군	예) 디지털 도어록, 월패드 등
제 품 명	예) 000 제품 또는 000 앱
모 델 명	

# 〈문서 이력〉

제출일자	주요 변경 이력

# 1. 인증기준 적용여부 및 미적용 사유

※ 적용 : 적용, 해당없음, 미적용 ※ 적용대상 또는 미적용 사유 :

적용인 항목의 경우 시험제품이 시험항목을 만족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, 미적용의 경우 해당 시험항목을 적용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작성

_			인증유형				
인증 영역		인증기준	라 이 트	베 이 직	슈탥다느	적용	적용대상 또는 미적용 사유
	1.1	안전한 인증정보 사용	0	0	0	적용/ 미적용/ 해당없 음	
	1.2	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	0	0	0		
식별 및	1.3	비인가 상호인증 제 한	_	0	0		
인증	1.4	반복된 인증시도 제한	0	0	0		
	1.5	정보노출 방지	-	0	0		
	1.6	안전한 세션 관리	_	0	0		
	2.1	전송 데이터 보호	0	0	0		
	2.2	저장 데이터 보호	0	0	0		
데이터 보호	2.3	중요정보 저장 영역 보호강화	-	-	R		
	2.4	개인정보 법적 준거성	-	0	0		
	2.5	중요정보 완전삭제	_	0	0		
	3.1	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사용	0	0	0		
암호	3.2	안전한 암호키 생성	-	0	0		
	3.3	안전한 암호키 관리	-		0		
	3.4	안전한 난수 생성	-	-	0		
	4.1	시큐어 코딩	-	0	0		
	4.2	소스코드 난독화	-	0	0		
소프트	4.3	소프트웨어 보안기능 시험	-	-	0		
웨어	4.4	알려진 취약점 조치	0	0	0		
보안	4.5	불필요한 기능 및 코드 제거	_	0	0		
	4.6	안전한 소프트웨어 적용	-	0	0		
	4.7	감사기록	_	-	0		
업데이트	5.1	모델명 및 제품정보	0	0	0		

		확인				
		·				
	5.2	안전한 업데이트 수행	0	0	0	
	5.3	업데이트 파일의 안전성 보장	_	0	0	
및 기술지원	5.4	업데이트 실패 시 복구		-	0	
	5.5	업데이트 기술 지원	-	-	0	
	5.6	업데이트 정보 제공	-	0	0	
	5.7	자동업데이트 기능 제공	_	-	R	
	6.1	안전한 운영체제 적 용	_	0	0	
	6.2	불필요한 계정 통제	-	0	0	
	6.3	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통제	_	0	0	
	6.4	불필요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비활성화	_	0	0	
	6.5	실행코드 및 설정파일 무결성 검증	-	-	0	
운영체제 및	6.6	장애 시 시스템 복원	-	-	0	
네트워크 보안	6.7	서비스 거부 공격 대응	_	-	R	
	6.8	운영체제 기능 보호	-	-	0	
	6.9	접근권한 최소화	_	_	0	
	6.10	비인가 소프트웨어 설치·실행차단	-	-	0	
	6.11	원격접속 통제	-	0	0	
	6.12	네트워크 트래픽 통제	-	0	0	
	7.1	안전한 부팅 및 자체시험	-	-	0	
	7.2	자체시험 실패 시 대응		-	0	
	7.3	하드웨어 장애 대응	-	-	0	
	7.4	무단 훼손 방어	-	-	R	
하드웨어 보안	7.5	부채널 공격 대응	-	-	R	
	7.6	메모리 공격 대응	-	-	R	
	7.7	비휘발성 메모리 보호	-	-	R	
	7.8	외부 인터페이스 보호	-	0	0	
	7.9	내부 인터페이스 보호	0	0	0	

# 2. 인증기준 준수 명세

2.1 식박	.1 식별 및 인증					
2.1.1 안	.1.1 안전한 인증정보 사용					
■ 인증	방식					
		예) ID/PW 인증방식, OTP 등				
■ 초기	인증정보 사용 여	부				
	사용 여부	사용 🗆 미사용 🗆				
	인증정보가 설정되 변경하는 기능 증적	어 있는 경우 관리 기능, 중요정보 접근 시 초기 인증정보를 덕				
	<i>O</i> []) <del>[</del>	관리자 메뉴 접근 시 초기 인증정보 강제 변경				
■ 초기 <del>증</del> 적	인증정보가 설정되어	있지 않는 경우 관리 기능, 중요정보 접근 시 인증정보 생성 기능				
		예) 관리자 메뉴 접근 시 인증정보 생성				
<b>■</b> 안전	한 인증정보 사용 🗧	증적				
	•	등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PW 복잡성 해설 기준 만족 내용 대소문자, 숫자, 특수문자 3가지 이상 조합, 6개월 이내 변경)				

# 첨부3.

#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하드웨어 설계도

제출일자	2022.1.1.
신청기업	
인증유형	예) Lite, Basic, Standard
제 품 군	예) 디지털 도어록, 월패드 등
제 품 명	예) 000 제품 또는 000 앱
모 델 명	

# 〈문서 이력〉

제출일자	주요 변경 이력

## 1. 하드웨어 사양

구분	시스템 사양				
Main MCU	예) 모델명 : STM32F103				
(RF SoC 등)	예) 사양 : ARM cortex M4				
외부 Memory	예) Flash Memory 1GB				
Storage	예) HDD 20GB				
기기 외부	예) Micro USB : 충전용				
인터페이스	예) SD 카드 슬롯 : 업데이트				
기기 내부	예) JTAG : 펌웨어 다운로드 및 디버깅				
인터페이스	예) UART : 디버깅				

## 2. 기기 내부

## 2.1 PCB 보드 상 포트 및 핀 식별

※ 시험제품 PCB 보드 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트 및 핀들에 대해 식별하고 어떤 용도인지 작성이 필요

PCB Top	<i>A</i> ( <i>t</i> )
PCB Bottom	<i>a</i> ( <i>y</i> )

# 2.2 내부 인터페이스 용도

포트, 핀 번호 (포트 사진)	용도 및 목적
예) 디지털 핀	예) LED 연결 핀, 통신 센서 모듈 연결 핀
OH) 18	예) UART 포트 : 디버깅 로그를 확인하기 위한 포트
예) J13	예) Jtag 포트 :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포트

## 2.3 PCB 회로 설계 사진

<앞면>	<뒷면>
	<앞면>

# 3. 기기 외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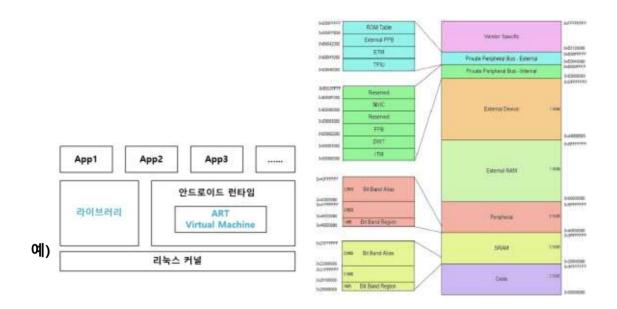
<앞면>	<뒷면>
(사진)	(사진)
<상측면>	<하측면>
(사진)	(사진)
<좌측면>	<우측면>
(사진)	(사진)

## 3.1 외부 인터페이스 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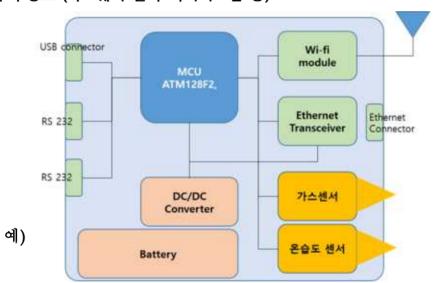
포트, 핀 번호 (포트 사진)	용도 및 목적
예) 이더넷 포트	예)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

## 4. 기기 구성도

#### 4.1 기기 논리적 구성도 (소프트웨어 구현 구조 및 메모리 구조 등)



#### 4.2 기기 물리적 구성도 (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 등)



#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접수증

접수번호	접수-2022-0001-L
인증유형	LITE, BASIC, STANDARD
신청기업	ABCDEFG
제 품 명	도어록
모 델 명	A-01111
시험대행기관	
비고	

위 제품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.

2022년 월 일

한국인터넷진흥원

㈜ㅇㅇㅇ 귀하